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09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249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4.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24,593,320원, 농어촌특별세 2,106,3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0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발기인으로서 1996. 8. 2. B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총 130,000주 중 65,000주(지분율 50%)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발기인으로서 2011. 7. 15. C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총 20,000주를 취득하였고, 2017. 5. 30. C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 총 48,532주를 취득하였다(지분율 100%).

다. B가 2017. 7. 31. C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함에 따라 원고는 합병대가로 B가 추가로 발행한 주식 32,500주를 취득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B 발행 주식 총 162,500주(= 130,000주 + 32,500주) 중 97,500주(= 65,000주 + 32,500주, 지분율 60%)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9. 6. 12. 피고에게 B가 보유하던 토지, 건물 및 차량운반구 등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B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감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
취득세	당초신고	891,935,225	17,838,700		3,567,740	3,186,880	24,593,320
	결정	891,935,225	17,838,700		3,567,740	3,186,880	24,593,320
	증감액						
농어촌특별세	당초신고	891,935,225	1,783,870			322,430	2,106,300
	결정	891,935,225	1,783,870			322,430	2,106,300
	증감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09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경우 과점주주에게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세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법인에게 취득세를 제외한 등록세만 각 부과하였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부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은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는 등 세목체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구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 지방세법 하에서도 구 지방세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원고는 B의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자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B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도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세율인 위 중과기준세율(2%)에서 다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 즉 '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만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09

다.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성립시기는 원고가 B의 과점주주가 된 2017. 7. 31.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부과에 대하여서는 구 지방세법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한편 개정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제7조 제5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의 경우(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C의 흡수합병 대가로 존속회사(B)가 소유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B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세율인 중과기준세율(2%)에서 다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 즉 '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09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만을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 제3호의 간주취득세에 관한 세율을 규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을 직접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준이고, 원고와 같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0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09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09

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09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등록

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다.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나.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4.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

5.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끝.